

# Yeosu Web Contents

2023년 10월 02일 20시 38분



# 목차

<b>목차</b>	<b>2</b>
<b>고충민원처리안내</b>	<b>3</b>
<b>고충민원이란?</b>	<b>3</b>
<b>고충민원 제외대상</b>	<b>3</b>
<b>고충민원 신청 방법</b>	<b>3</b>
방문	3
우편	3
문의	3
<b>고충민원 처리 절차</b>	<b>3</b>



## 고충민원이란?

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)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.

### 고충민원 제외대상

- 여수시의회에 관한 사항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
- 행정심판·행정소송·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
- 중앙부처 및 전남도 등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
- 검찰·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
-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질의 등의 관한 사항
-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
- 일반 단순민원 및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
- 옴부즈만 직무관할 범위를 벗어난 사항

### 고충민원 신청 방법

#### 방 문

시청(학동) 3층 시민옴부즈만실

#### 우 편

여수시 시청로 1, 여수시청 3층 시민옴부즈만실

#### 문 의

Tel : 061-659-3075 ~ 3078 / Fax : 061-659-5863



고충민원 신청서식 hwp 다운받기

### 고충민원 처리 절차

## 신청

방문, 우편, 전화 등으로 신청



## 접수

기재사항 및 내용 검토 (\*단순민원 부서 이첩)



## 조사여부 결정

조사여부 및 주관 읍부즈만 선정,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사개시 통보



## 조사실시
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



## 조사결과 확정

운영회의에서 조사결과 심의·의결



## 조사결과 통지

신청인, 관계기간에 3일 이내 통지

COPYRIGHT © YEOSU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